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9-5판)

2021. 5. 5.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5판)」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Ⅱ. 사례정의	신설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규정 - 코로나19 예방정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름
Ⅲ. 공항검역 대응 절차	신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응 조치 신설 -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음성확인 후 관할보건소에서 격리면제 전환 가능
	신설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별 입국자 조치(기 실시중) - 남아공·탄자니아/브라질·아프리카·인도 發 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및 격리장소 등 명시
Ⅳ. 항만 검역 대응 절차	신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응 조치 신설 -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음성확인 후 관할보건소에서 격리면제 전환 가능
	개정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자 추가(기 실시중) -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에 대한 제출 예외 확대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개정	• 코로나19 상기도검체 채취 방법 변경 - (기존) 상기도 검체는 구인두말물과 비인두도말물 모두 채취 → (변경) 구인두도말물 또는 비인두도말물 채취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5판)」에 따름
서식	신설	• 예방접종증명서 추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6호 서식)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증빙서류용 서식 추가
부록	신설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추가
	개정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대상 확대 -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까지 인정 → (변경)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중수본-13106호(2021.4.27.)호 관련

목 차

Ⅰ. 대응원칙 ····· 1

Ⅱ. 사례정의 ····· 2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1. 검역대응 흐름도 ····· 4
2. 검역조사 ····· 6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10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12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 15

1. 검역대응 흐름도 ····· 15
2. 검역조사 ····· 17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26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27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 31

Ⅶ. 접촉자 관리 ····· 34

Ⅷ. 기타 행정사항 ····· 37

서식 및 부록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 39
2. 예방접종증명서 ····· 40
3.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 41
4. 특별검역신고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 42
5. 검역확인증 ····· 44
6. 기초역학조사서 ····· 45
7. 격리통지서 ····· 46
8.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47
9. 격리면제서 ····· 48
10. 검체의뢰 관리대장 ····· 49
11.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50
12.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 51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 52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 53
15. 격리통지서 수령증 ····· 54
16. 감염병 발생 신고서 ····· 55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56
2.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 64
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 65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 66
5.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70
6.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 76
7.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 79
8.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 80

Ⅰ. 대응원칙

○ (**법적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 (**대응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코로나19 검역대응 FAQ' 참고

Ⅱ. 사례정의 등

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음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2021.5.5. 시행)

○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

  * 적용 국가 확정 시, 공문 등으로 통보 예정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구분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 장기 체류 외국인	제출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능동감시)	6~7,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총 2회)
		미제출	임시생활시설 (입소비용 본인부담)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능동감시)	6~7,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총 2회)
	미제출	제출	보건소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미제출 * 외국인 입국불허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격리해제전 검사
단기 체류 외국인	※ 세부절차 향후 마련	제출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격리해제전 검사
		미제출	입국불허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하여 출국한 '예방접종완료자'만 제출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격리면제자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후 격리면제 가능

<table>
<tr><th>구분</th><th></th><th>PCR
음성확인서</th><th></th><th>진단검사</th><th></th><th>검사결과</th><th></th><th>조치사항</th></tr>
<tr><td rowspan="2">격리면제자</td><td rowspan="2">⇨</td><td rowspan="2">제출</td><td rowspan="2">⇨</td><td rowspan="2">•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 결과 판정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td><td>⇨</td><td>양성</td><td>⇨</td><td>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td></tr>
<tr><td>⇨</td><td>음성</td><td>⇨</td><td>능동감시 실시(1339)
• 자가진단앱 설치
• 1339에서 매일 유선확인
• 5~7일 사이 추가 진단검사 실시</td></tr>
<tr><td></td><td>⇨</td><td>미제출</td><td>⇨</td><td colspan="4">상단의 '일반적인 대응 원칙'에 따름</td></tr>
</table>

* 격리면제자 중 인도적 목적과 공무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예외함

**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소지자와 그 가족 및 장·차관급 공무국외출장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 격리면제 신청 및 관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수본「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에 따름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發 입국자

※ 국가 목록 및 조치사항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

구 분	조치사항	비 고
남아공, 탄자니아 發	● (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격리해제 전 검사(총 2회) ● (격리) 14일간 시설격리 지속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입소비용 본인부담 * 외국인 입국불허(단,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허용함)
인도 發	● (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시설 퇴소 전 검사, 격리해제 전 검사(총 3회) * 시설격리 지속자는 시설 퇴소전 검사 생략 ● (격리) 7일 임시생활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및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 조치	
브라질, 그 외 아프리카 發	● (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격리해제 전 검사(총 2회) ● (격리)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대기하며,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조치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지속	
그 외 국가 發	상단의 '일반적인 대응 원칙'에 따름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인원 중 검역 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결과에서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관할보건소 확인 필요)

◆ 5월 변이주 유행국가 : 남아공변이 6개국, 브라질변이 3개국

- (남아공변이, 6개국)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 (브라질변이, 3개국)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 국가목록은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통보예정

2.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모든 입국자 대상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수행

- 검역관은 국내 입국자 전수 대상 발열확인(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서식 1] 확인, **격리주의 안내문 배부**[부록 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대상**)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조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로서, ①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②**무증상** ③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 ④**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회 진단검사(입국 1일, 6~7일, 12~13일차) 의무

○ (**검역소**) 입국자가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앱 또는 서류) → 변이주 유행국가 입국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접종일 기재) → 예방접종완료자 안내문 배부[부록 2]

- (**증명서 확인**) 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 확인
- (**출발국 확인**)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스티커 미부착)

  * 국가 목록은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통지 예정
- (**접종일 기재**) 접종완료(백신별 권장 횟수 충족)한 일자 기재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일)

○ (**특별입국부스**) '자가격리앱' 설치(일반 입국자와 동일)

○ (**출입국**)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의 국내 출국일 조회 → 격리통지서에 스탬프 날인 후 출국일자 기재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자가격리앱 삭제, 능동감시 실시) →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12~13일차 진단검사 실시

* 시설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도 '음성'일 경우 동일한 절차 적용(지자체에서 능동감시 전환)

- (**출국일 확인**)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출국한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므로, 격리통지서 내 스탬프에 적힌 출국일 확인

* 예시) 4.10. 접종한 경우, 4.25.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이외 지자체 역할 등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름

다. 'PCR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검역소**)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3.10. 10시 출발 시, 3.7. 0시 이후부터 출발전까지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는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영유아 입국**)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함

  * 보호자 미동행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함

○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대상자별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 「검역법」 제12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외국인**)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서식 3] 작성하여 신병 인계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 장기체류외국인에 한하여 입국불허 요청하지 않음

- (**내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후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부담)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음성' 확인후 자가격리로 전환 → 관할 보건소에서 출국일 등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사후관리**)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확인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공유

  *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로 강제퇴거요청 공문 발송

○ (**현황보고**) 'PCR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라. 특별입국절차

○ (**절차**) 입국 전용 심사대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② (**관련 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③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④ **(특별입국절차 완료에 따른 조치)** 연락처 및 입국자별 관련 앱 설치 여부 확인 후 다음의 조치 수행

- 연락처 및 앱 설치 확인 시 → 검역확인증 발급[서식 5]

* (법무부)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로 정보 공유

○ **(일일상황 보고)** 해당 검역소는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3.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격리 면제 대상자 등 입국자 모두 포함)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항공기 입항 전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 유증상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와 협의하여 의심환자 선(先)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수행

○ 고열(38℃초과) 지속, 호흡기증상(호흡곤란 등) 등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이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검역소 소재지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협의 필요

※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제9-5판)' 참고

[고위험군의 기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제9-5판)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정신질환자 등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6] 후 진단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수행
- **(개인보호구)**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검체채취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채취 완료자의 여권에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하여 구분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음성**)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능동감시 조치

* (**미국 외교관(A1)·관용여권(A2)·주한미군(A3)**) 소속부대에서 인계 후 진단검사 실시, 주한미군(A3)은 자체격리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 입국시 발열 등 유증상자로 구분된 경우, 검사결과 '음성' 이라도 격리면제 불가

4. 무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가.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 (**기본원칙**)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 (**진단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 탄자니아·남아공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간 시설격리

※ 브라질·인도·그외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대기, '음성' 확인 후 자가격리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III.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다.격리면제 대상자' 참고

나. 단기체류 외국인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 후(**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입국조치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정 시설에서 14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간 시설격리)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름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III.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다.격리면제 대상자' 참고

다.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하고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가격리앱을 우선 설치하며,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면제대상자임을 확인 시 자가진단앱 설치(자가격리앱 삭제)

○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 입국 시 유증상자일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자가진단앱 설치)

○ (**'A비자' 소지자**)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 자차 또는 공관차량 등 미리 확보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이동

** 다만, 신규 부임·단기출장 등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

- **미국 외교관(A1)·관용여권(A2) 및 주한미군(A3)** : 무증상자는 미군부대에서 인계 후 검사, 능동감시(앱설치 또는 미설치시 자체 능동감시),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 외교부에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미국 A비자(A1, A2) 소지자는 타 국가 A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함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에서 자체 격리

○ (**장·차관급 공무국외출장자**)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후 자차 등 미리 확보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이동(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가능

-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장·차관급(수행직원 포함) 등 외 기타 공무국외출장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대기

○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가능

※ 공항 내 입국장에서의 검체채취는 유증상자와 함께 채취가 이루어짐을 사전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검역소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상자별·출발국가별 분류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검사장소는 'III.공항 검역대응 절차 → 1. 검역대응 흐름도' 참고

< 격리 면제 대상자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③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④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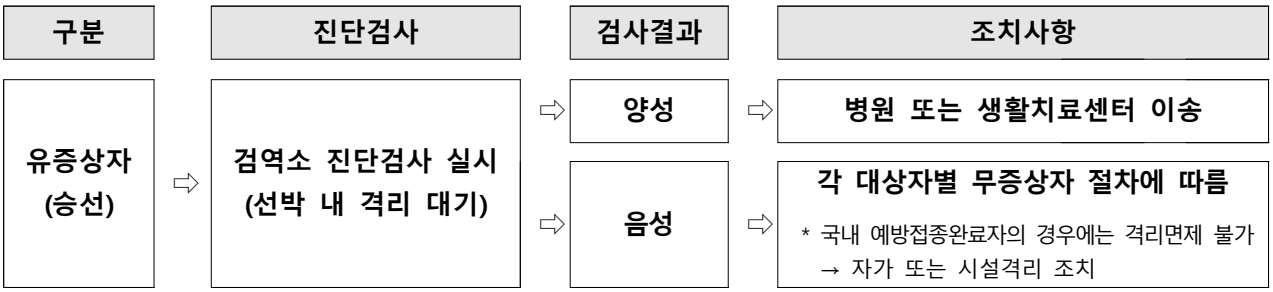
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자로 전환한 경우
▲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1]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2]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3]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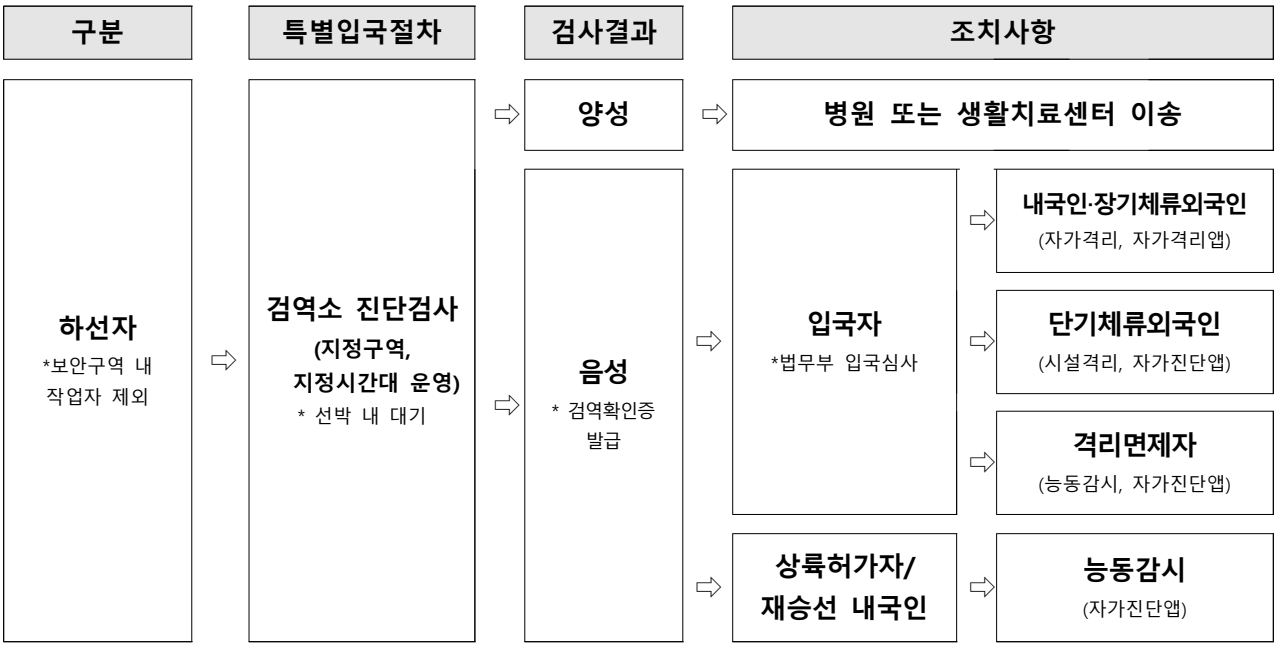
1.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하선자) 진행

□ 무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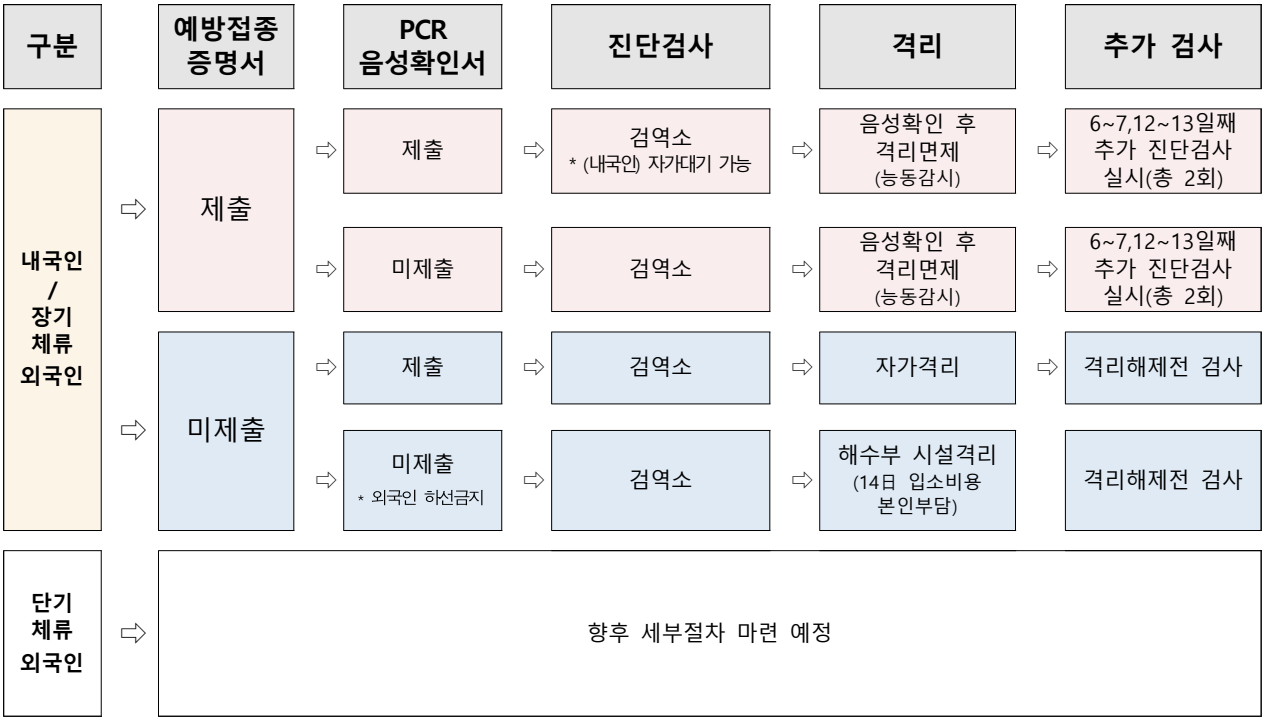


※ 하선자 용어정의

- **입국자** :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 **상륙허가자** :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 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하여 출국한 '예방접종완료자'만 제출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2.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1) **(승선검역)**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

* 승객 :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 선원의 가족,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

※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 [서식 8]

① 검역관리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

- **국가별 위험도*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으로 항만작업별, 선박 화종별 **접촉강도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

* **(국가별 위험도)**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와 국내유입 확진자 발생국가(정기적으로 별도 제공 예정)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출항국가의 위험도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 에서 출항하는 선박(14일 이내 경유 포함)**

*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

②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③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④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⑤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2) **(비승선 검역)** 승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전자검역** 또는 「검역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검역관은 전자검역으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대상)**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 **<조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로서, ①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②**무증상** ③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 ④**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회 진단검사(입국 1일, 6~7일, 12~13일차) 의무

○ **(검역소)** 입국자가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앱 또는 서류) → 변이주 유행국가 입국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접종일 기재) → 예방접종완료자 안내문 배부[부록 2]

* 전출항지 및 14일 이내 경유 여부 확인

- **(증명서 확인)** 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 확인
- **(출발국 확인)**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스티커 미부착)

  * 국가 목록은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통지 예정

- **(접종일 기재)** 접종완료(백신별 권장 횟수 충족)한 일자 기재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일)

○ **(출입국)**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의 국내 출국일 조회 → 격리통지서에 스탬프 날인 후 출국일자 기재

○ **(입국후, 지자체)** 검역소 진단검사 '음성'* →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자가격리앱 삭제, 능동감시 실시) →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12~13일차 진단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에서는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확인 후 격리면제 진행(검역 확인증과 본인이 검역소에서 받은 문자 확인)

- (**출국일 확인**)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후 출국한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므로, 격리통지서 내 스탬프에 적힌 출국일 확인

* 예시) 4.10. 접종한 경우, 4.25.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이외 지자체 역할 등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름

다. 'PCR 음성확인서' 확인[부록 3]

○ **제출 대상자**

- (**외국인**) ①'21.1.15일 이후 해외에서 승선한 외국인, ②'20.8.3일 이후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승선한 외국인
- (**내국인**) ①'21.1.15일 이후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승선한 내국인, ②'21.1.25일 이후 브라질에서 승선한 내국인, ③'21.2.22일 이후 아프리카에서 승선한 내국인, ④'21.2.24일 이후 해외에서 승선한 내국인

※ 단, 다음의 경우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① 승선국가 출항 후 28일*을 초과하고, 국내 입항 전 2개이상의 국가를 경유한 경우

* WHO종식기준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시기간(14일)의 2배로 산정

※ 예시) A국가 승선(9.3. 출항)→B국가→C국가→한국(10.3. 입항)

②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

③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

④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

* 동 대상자는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검역소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한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출국일 등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제출*한 대상자의 'PCR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자가로 실시하는 경우(예시. at-home-test)는 인정하지 않음
②발급시점	• 출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3.10. 10시 출항 시, 3.7. 0시 이후부터 출항전까지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는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러시아는 QR코드가 없는 경우 불인정)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사유 증명 시 인정가능

① 날씨 및 파고 등에 의한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로 출항 연기

② 운송수단의 고장 등으로 출항 연기

③ 기타 검역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항이 연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및 해당 선박의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 「검역법」 제12조, 제26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진단검사**) 미제출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작업 가능
- (**하선금지**) 동 선박 내 모든 선원에 대해 하선 금지

* 다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비용 본인부담) 14일간 격리조치 가능(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전환 가능)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IV.항만 검역대응 절차 → 1.검역대응 흐름도 참고(하선 및 격리면제 가능)

- **(차항지 확인)** 차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차항지 관할 검역소에 음성 확인서 기준 미달 사항 등 관련내용 정보 공유(하선금지 조치 유지)

○ (**현황보고**) 'PCR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라. 특별입국절차

○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징구**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검역관은 특별입국절차시 앱 설치 여부를 확인(단, 특별입국절차 실시일과 입국일이 다른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앱 실행 시기를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 입국심사시로 하고, 심사 완료 후 아이디 ID(CORONA)를 입력하여 앱을 실행토록 안내)

○ (**장소 등**) 검역소장은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출입국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선사나 해운대리점이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지정구역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특별입국절차**) 특별검역신고서 확인(인적사항, 국내 연락처·실거주지 등)

- (**관련 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자가진단앱 설치**) 단기체류외국인, 상륙허가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격리면제자

  • (**자가격리앱 설치**) 장기체류외국인, 하선자 중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내국인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앱 미설치 시 검역확인증 미발급 조치

-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일일상황 보고**)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마. 진단검사

○ (**대상**) **하선자 전원**(보안구역 내 작업 선원 제외)

-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출항 선박(14일 이내 경유 포함) 중 항만 근로자와 접촉강도가 높은 선박(원양어선, 냉동냉장선, 수리 목적 입항선)의 경우에는 하선여부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생략 가능

※ 부산으로 입항하는 원양어선, 냉동냉장선의 경우에는 「항만 입항선박 하역작업 방역관리 지침」에 따름

○ (**장소 등**) 검역소장은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출입국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체채취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유증상자)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수행

○ (**대기장소**) 검체채취 후 **선박 내 또는 자가 대기**

- (**외국인, 재승선내국인, 격리면제자**)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선박 내 대기

- (**내국인 입국자**)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자가에서 대기 가능

*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및 자차 등 안전한 이송체계 확보시(대중교통 이용 불가)

※ 유증상자는 선박 내 개인선실에서 진단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격리 대기

○ (**이동**) 해당 선원의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된 검체채취 장소까지 **동행**하며, 검체채취 후 대기 할 선박까지 이동

*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해당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여 동행하도록 안내

○ (**결과확인**)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내국인 자가격리대상자 또는 응급환자 등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 판정 전에 사전 발급 가능)

바. 격리 *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앱 설치**

* (법무부, 지방출입국관서)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자체로 정보 공유

- (**단기체류외국인**) 14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내부 지침에 따름

- (**이동**) 자가 또는 시설로 이동시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및 자차로 이동하고,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대중교통 이용 불가)

※ 상륙허가외국인 및 재승선내국인은 입국자로 보지 않으며, 격리 대상자가 아님

○ **격리면제자** * 14일 동안 자가진단앱 설치를 통한 능동감시

- (**대상 1**) 해수부(지방해수청)에 격리면제를 신청하고,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 또는 에서 출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① 전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의 내·외국인 선원

② 단거리 노선(한국-중국)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③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 향후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국취부나용선(BBCHP)'도 포함

- (**공통사항**)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해수부(지방해수청)에서의 격리 면제 요건 확인시까지 승선, 하역 등 외부접촉 금지

* (**선행조건**) 모든 선원(내·외국인)이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선 및 선원 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 (**대상 2**)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자로 전환한 경우

* **<조건>**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로서, ①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②**무증상** ③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 ④**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전출항지 및 14일 이내 경유)가 아닐 것**

☞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회 진단검사(입국 1일, 6~7일, 12~13일차) 의무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서식 9]

① 해수부에 면제신청(선사·해운대리점)

② 신청서 검토 후 검역소로 격리면제 협조요청(지방해수청)

③ 격리면제 협조요청서 확인 후 격리면제서 2부 발급(검역소)

④ 격리면제자 명단 공유(지방출입국관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해수부로 온메일 전송)

※ 선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은 해수부에서 검역소로 격리면제를 요청한 사람에 한함

< 격리 면제 대상자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③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④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④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건소에서 격리면제자로 전환한 경우

▲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1]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2]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3]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 주한미해군 또는 미해군 함정 승조원에 대한 사항은 '한-미 간 별도로 협의한 서한'에 따름

3. 유증상자 검역조사 · 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조사 후 역학조사 실시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개인보호구**)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검역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 후 진단검사 실시

- 선박 내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후 검역대상자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박 내 개인 선실에서 격리 대기**

- (**개인보호구**)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음성**)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능동감시 실시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된 경우, 입국시 발열 등 유증상자로 구분된 경우, 검사결과 '음성' 이라도 격리면제 불가

○ 고열(38℃초과) 지속, 호흡기증상(호흡곤란 등) 등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 이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과 협의 후 **의료기관 이송** 조치

※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제9-5판)' 참고

○ **유증상자 발생 선박의 경우**, 해당 선원의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까지 승·하선 및 하역 등 작업 금지**

※ 선박 내 확진자 발생 시 전 선원 하선 금지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가.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시설(실), 선내 등)

○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부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
- (**하기도 검체**)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가래 유도 금지)

○ (**개인보호구**)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부록 5]
  ※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

○ (**검사의뢰**)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공문 등)**
  * 검체 의뢰시 검체의뢰 관리대장[서식 10]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 검역소는 매달초에 해외출입국관리팀(메모보고)으로 실적 송부

○ (**검사수행**)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필요시 수탁기관 활용)[서식 11]
  *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결과회신**)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공문 등)

○ (**양성 확인**)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유선보고 등)

* 단,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으로 유선보고

- (**양성보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당일 보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최초 양성 판정시**)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 판정 시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

나.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임시 격리

※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 (**격리 장소**)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 선박 하선자의 경우 진단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

- 임시격리 장소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함**

-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시설(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검역소 시설 공동 이용 * 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

- 조사대상 유증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검역관**) 각 검역소 임시격리 장소로 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12]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갈음

- (**격리관찰자**)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 조치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격리병상 배정요청 후 이송

** 격리대상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부록 6]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 음성)**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해당 안내문 배부, 14일 동안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해당 앱 설치 확인

  *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입국자의 경우 퇴소 전 발부

- **(검사 양성)**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유선보고 및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증 이상) 또는 생활치료센터(경증) 배정 요청 및 이송

- **(검사 미결정)** 추가 검사 실시하며, 미결정 3회 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격리 관리(해당 지자체로 미결정 사실 통보)

  • **(단기체류외국인)**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

  * 항만 입국자는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

○ **(검사결과 보고)**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항만) 자가에서 대기 중인 내국인 입국자의 검사결과는 각 항만 검역소에서 본인 연락처로 SMS 등 유·무선 통보

  ※ 검사확인서[서식 13]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발급 불가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 (**환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조치결과**) 확진환자 이송(병상배정 포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 (**관련 자료 공유**)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FAX 또는 공문 전송

- (**통보방법**) 프로그램 내 '비고(특이사항)' 란에 "①검역소명,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 등 작성 후 통보

2.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검역관**)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시·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

*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 (**시·도 연락담당관**)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병상 배정 결과 및 담당자 번호 검역소에 공유

<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절차_중수본 제공 >

○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 **(인천공항)**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
  * 다만,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 공유) * 중수본-1994호(2021.1.18.) 참고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경증 확진자

① 공항 입국자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거나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외국인)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장·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고, **인천공항 외 공항의 경우**에는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인천공항 확진자 이송**)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공항 대기 119에서,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도에서 담당

② 항만 입국자

-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 거주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해당 시도 병상 배정이 곤란한 경우,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요청 가능

3.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 (**확진환자 이송**) 병원(생활치료센터)에 확진환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사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 (**확진환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생활치료센터)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를 설명)

※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 지원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구급차)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판단하에 분류

* 검역소 내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접촉자 조사 지원

※ 접촉자 조사는 확진환자 판정 시에 시행하되,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확진 전 사전에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

구 분	조사대상자	접촉자 범위
항공기	탑승객	근접좌석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
	승무원	담당 구역 전체 탑승객과 그 외 서비스를 수행한 접촉 탑승객, 접촉한 동승 승무원
	조종실 승무원 (기장, 부기장 등)	조종실 동석자, 접촉한 동승 승무원, 그 외 이동 동선에 따라 접촉한 탑승객
선박	탑승객, 승무원	역학조사관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의심환자 이외 전원 접촉자로 간주
		- 수리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에 승선한 수리공 포함 - 선박 하역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포함

* 근접좌석탑승객(총 5열)이란, 항공기 내 확진환자 좌석 해당 열(row) 전체 탑승객과 확진환자 좌석 앞·뒤 2열 전체 탑승객을 의미함

○ **(검역관)** 좌석배치도, 승객 · 승무원 명단을 참고하여 항공기 내 근접 좌석탑승객 및 승무원 명단 작성[서식 14]

- 선박 내 접촉자 명단 작성

※ 근접좌석탑승객 및 승무원 등 접촉자 명단은 **확진 시 통보**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접촉자 관리**) 확진자의 접촉자가 선박 내에 격리되어 있을 경우 손소독제·마스크·장갑 등을 배포하고, 격리 수칙 안내문 배포

- 해당 선박의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 발생시 관할검역소로 신고하도록 안내

* 검역소는 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령증[서식 15] 징구

※ 필요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이송 가능하며, 시설 배정 및 이송관련 협의 조치

○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감시기간*(14일) 동안 하역, 수리 등 작업 중지**

* 감시기간 내 접촉자 중 확진자 추가발생시, 추가 발생일로부터 감시기간 재산정

※ 비대면 하역작업이 가능한 경우(컨테이너선, 액체화물선, LPG운반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 기계하역 가능 선박)에는 신속하게 하역 후 즉시 출항 가능

- 선사 등에서 접촉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국외출항(회항 등) 희망할 경우(단, 국내항 이동은 불가), 출항 시 IHR 통보*

* 위기분석국제협력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확진자 발생일,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

○ (**접촉자 격리해제**) 선내에 격리되어 있는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일 경우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됨을 해당 선사나 해운대리점에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접촉자 명단 통보**) 검역소는 확진자 명단을 통보한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접촉자 명단 통보 및 중앙방역대책본부(격리자관리팀, 역학조사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접촉자 명단 보고

* 통보받은 보건소는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등록 및 접촉자의 관할 보건소로 이관

※ 확진자의 접촉자를 선내에서 격리할 경우, 지자체로 명단 미통보

3.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부록 7]

※ 검역관리대상자 : 역학조사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중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 (**출국 시**) 검역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받은 검역관리대상자 출국정보를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쪽지 등)

○ (**입국 시**)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조치사항 내용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보고(메모보고)

Ⅷ. 기타 행정사항

○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이동금지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조요청**)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 (**검사결과 확인**)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및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 실시

○ (**폐기물 처리**)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격리시설(실)의 경우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폐기물 처리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현장검역,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

- 검역인력 :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
- 검역지원인력* : 개별 건강관리 카드 작성, 전담검역관이 직접 하루 2회(출·퇴근시)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하여 기록(보관 유지)

* 검역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해제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공·항만 상주기관 직원 감염관리**

-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 (**PCR 재검출자***) 해외입국자 중 국외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격리해제된 경우라도,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 수행

* (정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격리해제 후 재양성 판정 받은 경우(구. 재양성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에 준하여 조치**

○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통지서 수령증 : 격리기간 경과 시 파기**

*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등 보관기간을 준용하여 적용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4.>

건강상태 질문서

(앞쪽)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항공기· 열차·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1)	2)	3)	4)

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발열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발진
[ ]황달	[ ]의식저하	[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 ]그 밖의 증상( )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관련 약 복용	[ ] 현지 병원 방문	[ ] 동물 접촉

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없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210㎜[황색지(80g/㎡)]

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검역소→법무부]**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불허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위 승객은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국불허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

① 연락처 현장수신 확인 불가 [ ]

② 격리거부, 격리비용 납부거부 등 시설격리 조치 불응 [ ]

③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확인 [ ]

④ 기타 사유 [ ]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_____검역소장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 특별검역신고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 앞면>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성명 Name(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国籍)	항공기 편명(선명) Flignt·Ship No.(航空)
여권번호 Passport No.(护照号码)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到达日期)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 (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전화 Mobile Phone No.(手机号码)

실 거주지 건물주(또는 관리인) 연락처 (H-2, F-4, G-1 자격 소지 외국인만 작성) Contact information of landlord (or manager) of current actual residence (Fill this out if you are H-2, F-4, or G-1 visa holder) 实际居住地的主人联系方式(或管理人) (只H-2, F-4, G-1签证的外国人填写)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출발 국가 및 도시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and cit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和城市名称。

본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 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 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0 년 월 일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国立检疫所长** 敬启)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Self Diagnosis Mobile APP

<안드로이드·아이폰용>
Google Play/APP Store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안드로이드 다운> <안드로이드용> Google Play <아이폰용> APP Store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Self-Check Mobile App Installation Instructions

< 한국어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사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입국 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신 분은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앱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정보를 매일 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ENGLISH >

Holders of A-1 (diplomat) or A-2 (government official) visa or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required to install the Self-Check application on their phone and self-report thei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arrival in Korea. Personal details entered in the app must coincide with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Travel Record Declaration. If any of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changes (including your contact information) during your visit, you need to update this information on the app. You may receive SMS reminders to submit you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during the 14 days. Please record your health status on the app everyday.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안내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Mobile App Installation Instructions

< 한국어 >

입국하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ID : CORONA

< ENGLISH >

Korean nationals or long-term visa holders who are entering or returning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another country are required install the mobile application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their phone and abide by the self-quarantine guidelines for a period of 14 days, including self-reporting their health status on the app every day.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area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a wristband that wireless connects to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on your phone.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facility and the expenses will be charged to you.

서식 5 검역확인증

검역 확인증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성명(Name):

본 검역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유효기간 : (Valid date) **년** (yy) **월** (mm) **일까지** (dd)

발급일 : (Issue date) **년** (yy) **월** (mm) **일** (dd)

검역관 성명 : (The Quarantine Officer Name) (서명) (Signature)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KDCA

서식 6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서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 남 □ 여
1.4 국적	□국내 □국외 (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2 여행 목적	□ 관광 □ 업무(출장) □ 해외근무 □기타( )										
2.3 입국 시 경유	□ 예 □ 아니오										
2.3.1.입국시 경유지	입국 경로 : - - -										
	항공편/선박명 : - - -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 □ 출입함 (출입한 공항: 공항 밖 체류시간:) □출입안함										
2.4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선박명 (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 발열 (주관적호소, 미인지발열)	□ 호흡기증상	□ 비호흡기 증상	□ 기타 증상
3.1.1 발현 일시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3.1.2. 증상의 종류	□주관적 호소 □미인지 발열 (체온 : 1차 - ℃ 2차 - ℃ 3차 - ℃)	□폐렴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콧물/코막힘 □후각저하(후각상실) □미각저하(미각상실)	□구토 □복통 □설사 □기타 ( )
3.2 증상 소실 여부	□증상소실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증상소실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증상소실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증상소실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3.3 해열제 복용여부	□예 (마지막 복용시간: 월 일 시) □아니오	3.4 흡연여부	□예 □아니오
3.5 기저 질환(질병력)	□예 (기저질환:) □아니오	3.6 임신 여부	□예 (주) □아니오
3.7 의료기관 진단	□ 폐렴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기타 ( ) □ 흉부방사선촬영 : □예 (소견 :) □아니오		

4. 역학적 연관성

4.1 동반자	□단독(1인)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 명, 관계)	
4.2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환자이름 / 관계: 접촉날짜 및 장소: ,
	□급성호흡기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접촉일: 년 월 일
	□현지의료기관 방문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코로나19 PCR 검사 여부	예: (음성/양성, 날짜:) 아니오
	□해당 없음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해외방문 ( ) □확진환자 접촉	임상증상: □폐렴 □발열+호흡기증상 □발열 □호흡기증상 □기타( )	
검역소 조치사항(중복기입)	□시설격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으로 이송 □보건교육		
검체채취 구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채취 □검역소 격리시설 검체채취 □검역소 내 검체채취 □기타( )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서식 7 격리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11.>

입원·격리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원/격리 사 유			
입원/격리 내 용	입원일 / 격리 시행일		
	입원기간 / 격리기간		
	입원/격리 장 소	[ ] 병의원 [ ] 자택 [ ]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점검 항목

순서	점검 항목	검역조사 방법 분류
①	코로나19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서 입항한 선박 중 선내 엔진실, 냉동창고 등에서 승선 작업자가 마스크 착용 및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 *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국가는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통보	**승선검역**
②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하거나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동 대상국가를 경유한 선박	**승선검역**
③	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승선검역**
④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승선검역**
⑤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승선검역**
⑥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 도선사 등 '검역 전 승선허가자'는 예외	**승선검역**

- **검역조사 방법**

  ㆍ**(승선검역) ①, ②, ③, ④, ⑤, ⑥**

  ㆍ**(전자검역) '①' ~ '⑥' 중 전부 "미해당" 인 경우**

□ 점검 시점 :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식 9 **격리면제서**

격 리 면 제 서

격리면제 신청자 정보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 (한국내 연락처)
	한국 내 주소 ※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소속(직업)	한국 내 입국보증인(연락처)
	선박명(선박번호)	신청자(선사/대리점)
	최종출항지	출항일시
	체류기간	출국예정일(외국인 해당)
격리 면제 사유	□ 접안 전 14일 이상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③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전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제출 서류	(해수부 제공) 하선 선원 격리면제 신청서 1부, 하선 선원 격리면제 협조 요청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국립검역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합니다.

※ 동 면제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에서 하선하여 입국하는 선원 중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양성일 경우 치료를 위해 격리됩니다.
※ 입국 후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14일 동안 매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동 서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격리면제서 발급 검역관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국립○○검역소 증인

서식 10 검사의뢰 관리대장 양식(엑셀작성)

*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비고에 여권번호 기재)

연번	의뢰일	성 (Surname)	이름 (Given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운송 수단명	검체 종류	의뢰기관명	판정결과	판정결과 통보일	인수자	인계자	비고
(예)	2020-03-01	홍	길동	REPUBLIC OF KOREA	yymmdd		상기도 또는 하기도		양성 또는 음성	2020-03-02			
(설명)	***yyyy-mm-dd*** 형식 유지	***성명 작성*** - 내국인은 "한글명"으로 작성 -외국인은여권에 명시된 "영문명"으로띄어쓰기일치하게 작성		***여권에 명시된 공식적인 국적(영문)***으로 기재 -예시)REPUBLIC OFKOREA(o) 대한민국(x) 한국(x) South Korea(X)	***주민번호 앞자리 형식(yymmdd)으로 6자리*** 기재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데이터만기재 (★ 검체 1건을 기준으로 작성!!)*** 1명이상·하기도2건검사했을경우,***상·하기도 각각 분리하여 작성*** (셀추가하여 2줄로작성) - 구인두, 객담, 구, 비, 객 등으로 나열 표기 금지		***미결정***(indeterminate)는 데이터에서 ***삭제***	***yyyy-mm-dd*** 형식유지			

서식 11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11.>

<table>
<tr><td colspan="5">( ) 검체 시험의뢰서</td><td>처리기간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의뢰기관</td><td rowspan="2">의료기관명</td><td rowspan="2"></td><td>담당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담당자 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
(팩스번호:)</td></tr>
<tr><td rowspan="2">환자</td><td>성 명
(또는 관리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성 별</td><td></td></tr>
<tr><td>발병일</td><td></td><td>검체채취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검체 종류(수량)</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시험항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td></tr>
<tr><td colspan="6">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td></tr>
<tr><td colspan="6">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 결재 → 성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청(담당부서)</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2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격리대상자 관리 대장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선(기) 명	체류지역 (기간)	주소	입실시 증상 (시작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이송현황
	홍길동(남) *(1980.1.1)*	*KOREA*	*DONG-A* *(CHINA)*	*중국(7일)*		*발열, 인후통* *(2018.1.1)*	*1.10*	*1.20*	*1*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서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확인서

신청인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운송수단 명	
	주 소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종류	채취 목적	비고

위 사람의 (검체) 에 대한 (병명)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결과

검사항목	최종결과	결과 판정일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직인

서식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직업_직장명 (학교명)	최종접촉일	의사환자여부
	띄어쓰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홍OO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41234	02123412 34	OO병원	20150630	Y
2	홍OO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1234	02123412 34	OO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중국	01012341234	02123412 34	OO기업	20150630	N
4	홍OO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1234	02123412 34	무직	20150630	N

서식 15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수령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될 수 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6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_____검역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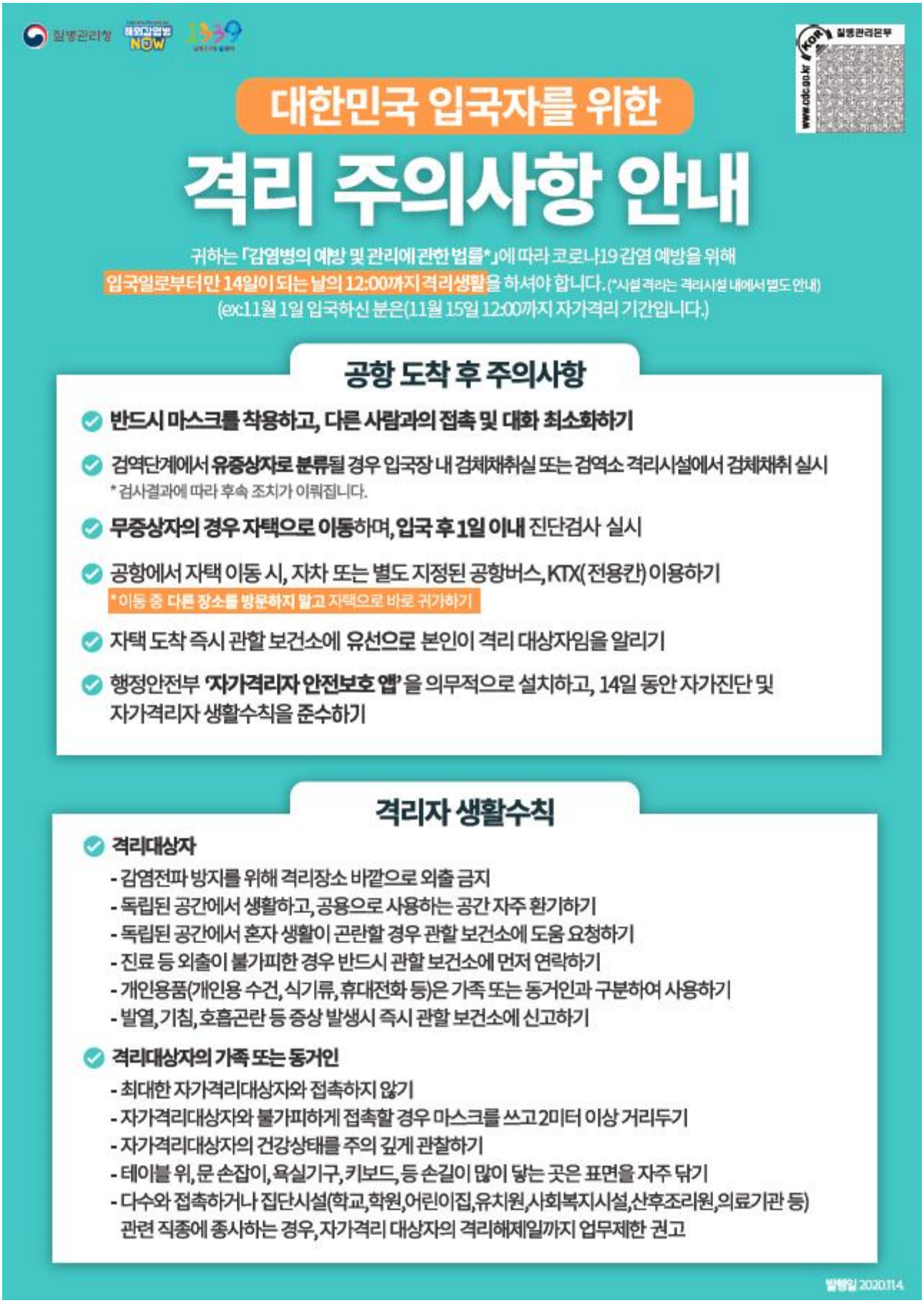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항만포함)

〈국문〉



질병관리청 | 1339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http://url.kr/9dqRor	http://url.kr/5rntzH	http://url.kr/f7dm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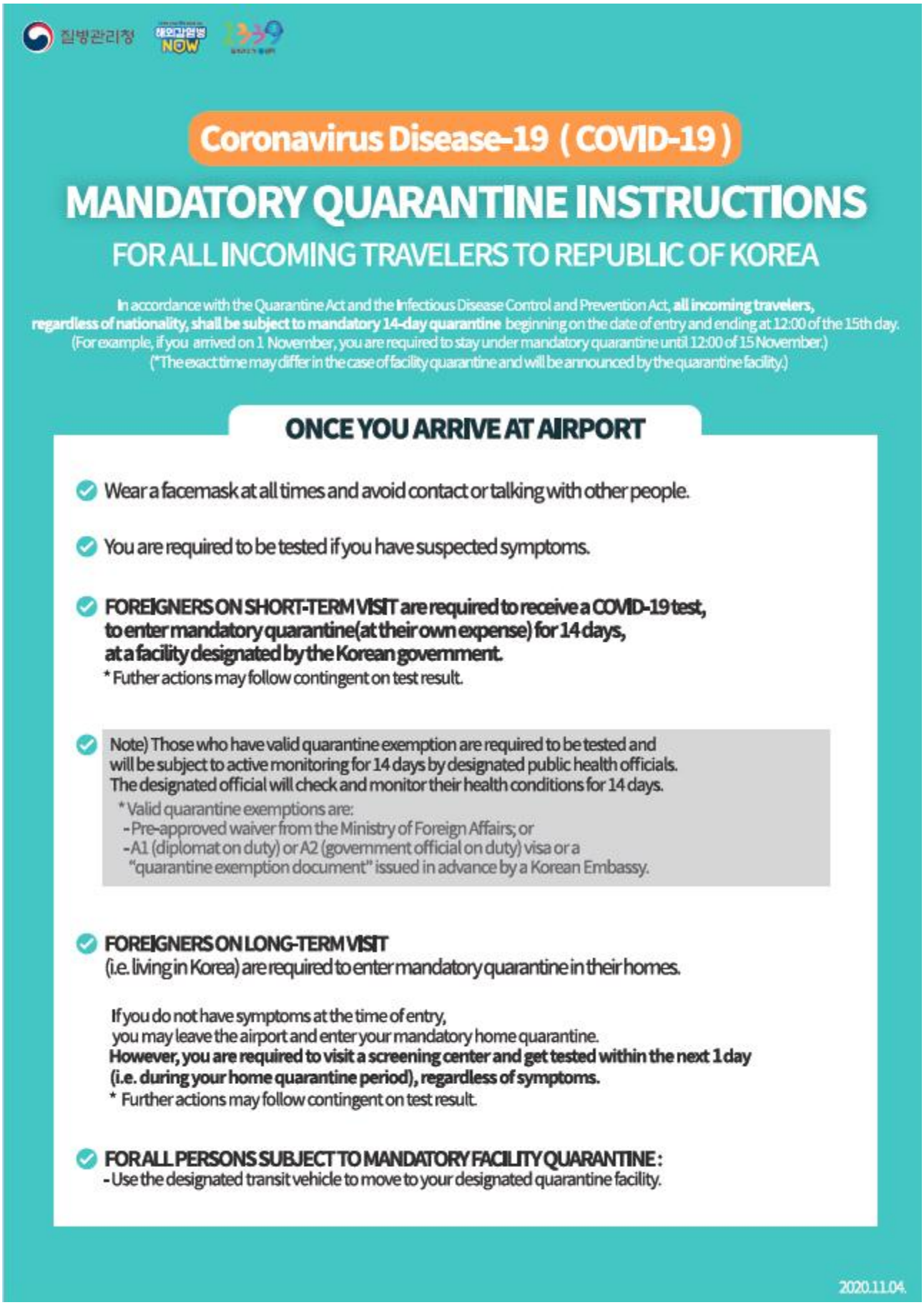
ID : CORONA | 다운로드 :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앱 스토어)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1.14.

<영문>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1339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MANDATORY QUARANTINE INSTRUCTIONS
FOR ALL INCOMING TRAVELERS TO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Act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ll incoming travelers, regardless of nationality,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14-day quarantine beginning on the date of entry and ending at 12:00 of the 15th day.
(For example, if you arrived on 1 November, you are required to stay under mandatory quarantine until 12:00 of 15 November.)
(*The exact time may differ in the case of facility quarantine and will be announced by the quarantine facility.)
ONCE YOU ARRIVE AT AIRPORT
Wear a facemask at all times and avoid contact or talking with other people.
You are required to be tested if you have suspected symptoms.
FOREIGNERS ON SHORT-TERM VISIT are required to receive a COVID-19 test,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at their own expense) for 14 days,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 Futher actions may follow contingent on test result.
Note) Those who have valid quarantine exemption are required to be tested and will be subject to active monitoring for 14 days by designated public health officials. The designated official will check and monitor their health conditions for 14 days.
* Valid quarantine exemptions are:
- Pre-approved waiver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
- A1 (diplomat on duty) or A2 (government official on duty) visa or a "quarantine exemption document" issued in advance by a Korean Embassy.
FOREIGNERS ON LONG-TERM VISIT
(i.e. living in Korea) are required to enter mandatory quarantine in their homes.
If you do not have symptoms at the time of entry, you may leave the airport and enter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However, you are required to visit a screening center and get tested within the next 1 day (i.e.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regardless of symptoms.
* Further actions may follow contingent on test result.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FACILITY QUARANTINE :
- Use the designated transit vehicle to move to your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y.
2020.11.04.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1339

FOR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

- When you leave the airport, do not take public transportation.
  Use a personal car or designated mode of transit (designated airport limousine bus or KTX train).
  * Go home directly from the airport. Do not make stops in other locations.
- As soon as you arrive home, call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to inform them that you are under quarantine.
-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your phone. (This is mandatory.)

Android	Google Play	App Store
http://url.kr/9dqRor	http://url.kr./5rntzH	http://url.kr/f7dmWs

ABOUT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

*All persons subject to mandatory home quarantine
(all Korean nationals and all foreign nationals on long-term visit)
are required to install the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on their mobile phone and comply with
the quarantine rules for 14 days of quarantine. (ID: CORONA)
(If there is any change to your phone number or where you live,
you must notify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as soon as possible.)

HOME QUARANTINE GUIDELINES

INSTRUCTIONS FOR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protect other people in your community from possible infection, do not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i.e. your home) as much as possible.
- If you need to leave home for an essential need (such as getting medical care),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irst.
- Make sur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 If there is any space in your home that is shared with other household members (such as family members, roommates, and cohabitants), make sure that the common space is frequently ventilated.
- If you are unabl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ask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or help.
- Keep your personal items (such as towels, eating utensils, and mobile phones) separat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 Immediately report to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if you begin to show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respiratory symptoms.

INSTRUCTIONS FOR HOUSEHOLD MEMBERS LIVING WITH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your best ability, avoid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come in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make sure to wear a facemask and keep a distance of at least 2 meters between you and the person.
- Closely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Keep clean all frequently touched surfaces and object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bedside tables, and keyboards.
- If your work setting involves frequent contact with many peop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 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care institution),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until your household member is released from mandatory home quarantine.

GENERAL INFECTION PREVENTION TIPS

-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 when coughing.**
-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 **Wear a facemask if you have fever or respiratory or respiratory symptoms, or when you visit hospitals, clinics, or pharmacies.**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mandatory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a location-tracking wristband that wirelessly connects to your phone's Home 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designated facility at your own expense.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Act.

2020.11.04.

<국문>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1339

www.cdc.go.kr 질병관리본부

항만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 입항 후 주의사항

- **모든 하선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박 또는 지정장소에서 대기**
  ※ 단, 보안구역 내에서 작업(갱웨이 설치, 선박고정작업, 흘수 측정 등)하는 자는 진단검사 제외
- **입국자** ①내국인 : 자가격리 앱 설치 후 14일간 자가격리
  ②외국인 : 자가진단 앱 설치 후 14일간 시설격리
- **상륙허가자* 및 재승선 내국인**** : 자가진단 앱 설치 후 14일간 능동감시
  *상륙허가자 :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격리자 생활수칙

-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발행일 : 2020.09.21.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1339

www.cdc.go.kr 질병관리본부

항만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Self Diagnosis Mobile APP

안드로이드·아이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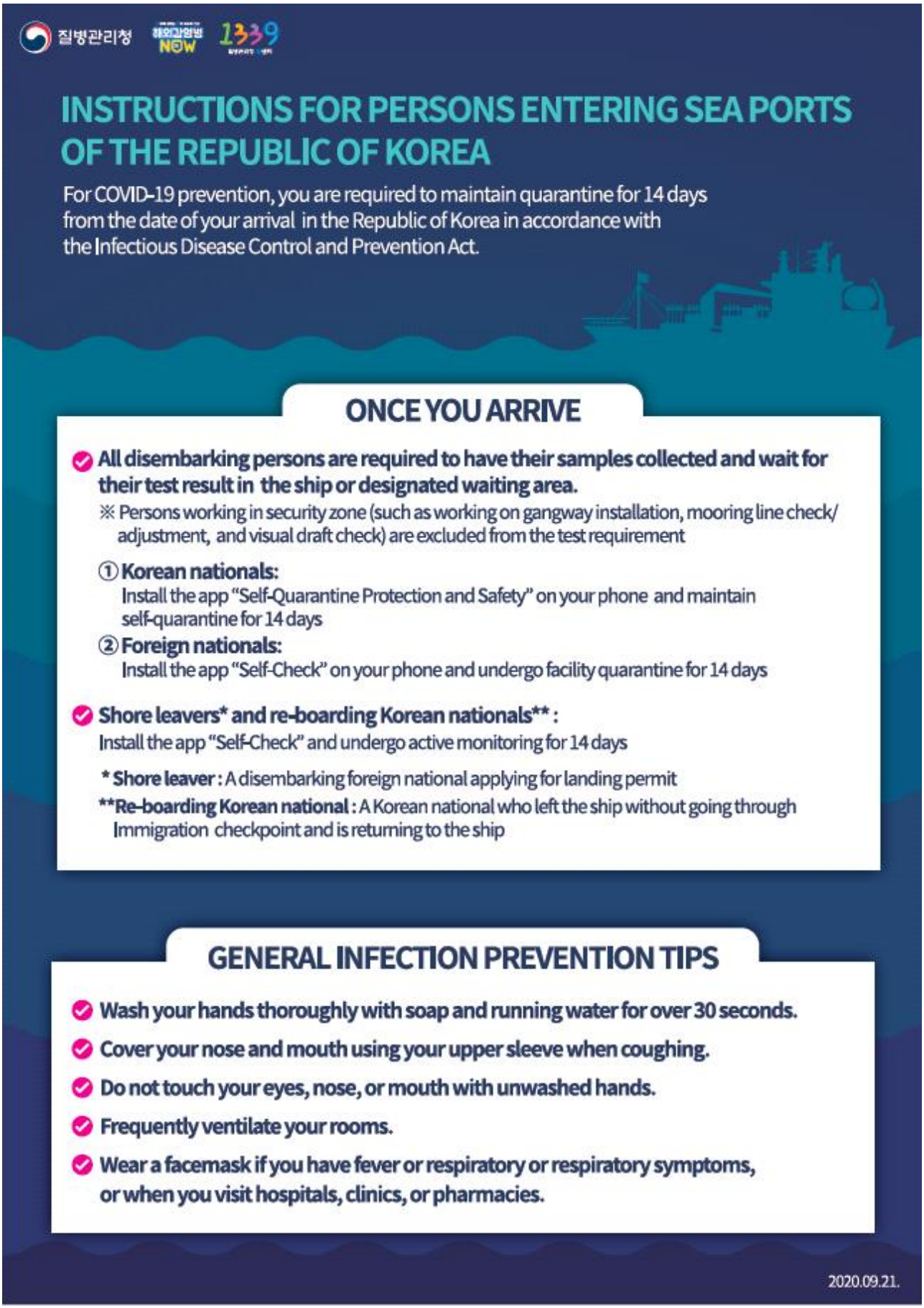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안드로이드 다운 | 구글 플레이 | 앱 스토어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 2020.09.21.

<영문>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1339
INSTRUCTIONS FOR PERSONS ENTERING SEA 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VID-19 prevention, you are required to maintain quarantine for 14 days from the date of your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ONCE YOU ARRIVE
All disembarking persons are required to have their samples collected and wait for their test result in the ship or designated waiting area.
※ Persons working in security zone (such as working on gangway installation, mooring line check/ adjustment, and visual draft check) are excluded from the test requirement
① Korean nationals:
Install the app "Self-Quarantine Protection and Safety" on your phone and maintain self-quarantine for 14 days
② Foreign nationals:
Install the app "Self-Check" on your phone and undergo facility quarantine for 14 days
Shore leavers* and re-boarding Korean nationals** :
Install the app "Self-Check" and undergo active monitoring for 14 days
* Shore leaver : A disembarking foreign national applying for landing permit
**Re-boarding Korean national : A Korean national who left the ship without going through Immigration checkpoint and is returning to the ship
GENERAL INFECTION PREVENTION TIPS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 when coughing.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Wear a facemask if you have fever or respiratory or respiratory symptoms, or when you visit hospitals, clinics, or pharmacies.
2020.09.21.

질병관리청

INSTRUCTIONS FOR PERSONS ENTERING SEA 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HOME QUARANTINE GUIDELINES

INSTRUCTIONS FOR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protect other people in your community from possible infection, do not leave your quarantine location (i.e. your home) as much as possible.
- If you need to leave home for an essential need (such as getting medical care),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irst.
- Make sur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 If there is any space in your home that is shared with other household members (such as family members, roommates, and cohabitants), make sure that the common space is frequently ventilated.
- If you are unable to secure an independent living space, ask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for help.
- Keep your personal items (such as towels, eating utensils, and mobile phones) separate from other household members.
- Immediately report to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if you begin to show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respiratory symptoms.

INSTRUCTIONS FOR HOUSEHOLD MEMBERS LIVING WITH PERSON UNDER MANDATORY HOME QUARANTINE:

- To your best ability, avoid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come in contact with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make sure to wear a facemask and keep a distance of at least 2 meters between you and the person.
- Closely monitor the health condition of the quarantined household member.
- Keep clean all frequently touched surfaces and object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bedside tables, and keyboards.
- If your work setting involves frequent contact with many peop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care institution),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until your household member is released from mandatory home quarantine.

Self Diagnosis Mobile APP

Google Play/IOS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Android Download | Google Play | IOS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Act.

2020.09.21.

부록 2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해외입국자용)

국내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면제 및 능동감시 안내
(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1일 이내 살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격리통지서**를 제출하고 예방접종 사실을 알린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출국 이전까지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후 출국자**)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④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격리면제(능동감시) 전환

※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선정 및 안내 예정(질병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부록 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 절차

○ **(대상자)** ①'20.8.3일 이후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승선한 외국인, ②'21.1.15일 이후 해외에서 승선한 외국인

* 단, '21.1.15일 이후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21.1.25일 이후 브라질에서 승선한 내국인은 제출 대상임

* 선박 내 기 승선해 있던 선원이 아닌, 동 국가에서 승선한 외국인에 해당

○ **(검역조사 절차 안내)**

PCR음성 확인서 사전확인 ⇒ 검역조사 ⇒ 진단검사 ⇒ 특별입국절차 (하선자 대상) ⇒ 법무부 입국심사

① **(PCR음성확인서 사전 확인)** 선박 입항전 선사나 해운대리점으로부터 PCR음성확인서 수령하여 사전에 확인

- PCR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소지자 또는 미소지자 있을 경우, 해당 선박 내 전 선원 하선 금지 및 **부적정 제출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부적정 서류 제출 선원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작업 가능)

  * 72시간 초과 발급 또는 미지정 기관(방역강화대상국가등 승선만 해당) 발급

- 부적정 서류를 제출한 내국인이 선원교대 등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 시설(비용은 자부담)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검역조사) 승선 또는 비승선하여 검역조사 실시**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 출항 선박 전수 승선검역 및 선원 근로자 간 대면접촉이 있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 실시

③ **(진단검사 실시)** 검체채취 후 선박 내 대기, 진단검사 결과 '음성' 시 검역확인증 발급(선사나 해운대리점 일괄 대리 수령)

④ **(특별입국절차)**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 징구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⑤ **(법무부 입국심사)** 입국심사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및 자가격리자 정보 지자체로 통보

부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채취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가래	·(용기) 멸균 50㎖ 튜브 ·(검체량) 3㎖ 이상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1]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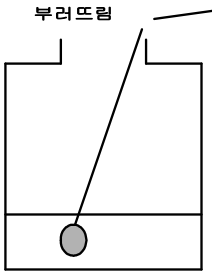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상기도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 (4℃ 유지)

<가래 채취 방법>

○ **검체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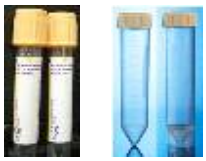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 3중 포장용기 예시 >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코로나바이러스-19 실험실 진단검사 의뢰 (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서식 11]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

○ (**수탁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질병대응센터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청)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 **(질병대응센터)**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19 실험실 진단검사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의뢰 해당 검역소 및 방대본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부록 5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특히 냉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신보호복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

접수·안내 (비닐가운 또는 긴팔 가운)	진료, 검체 채취		
	① 긴팔가운 4종 세트(모자는 선택)	또는	② 전신보호복(레벨 D)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Glove)	접촉	• 손 오염 방지 •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덧신 (Shoe cover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신발덮개 대신 착용 •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헤어캡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 의심/확진 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1]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구급차 운전자)[2]		●		●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구급차 소독		●		●		●	●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3]		●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사체 이송, 안치		●		●		●	
병실 청소·소독		●		●	●		●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1) 의심·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의(착용)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5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4]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5](제거) 순서	1	(겉)장갑	(겉)장갑
	2	장갑 소독	장갑 소독
	3	전신보호복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4	신발커버(또는 장화)	후드
	5	장갑소독	전신보호복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4) PAPR과 후두 착・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5)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부록 6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안 내 문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수칙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

1. This is a **quarantine facility**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2. Wait here until your **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
   ※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
3.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4.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
5.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 please **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
6.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
7. This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8.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
9.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fevers, coughing, breathing difficulties, and other symptoms.**

Health & Safety Rules

1.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
2.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e.g. coughing, sore throat, and runny nose,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

〈중문〉

隔离者须知

1.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隔离室**。
2. 在**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需在此等待。

※ 若确诊为传染病则**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保健教育后即可回家**。

3.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禁止外出。
4. 在隔离室期间，免费提供饮食。
5. 如需检疫官的帮助，请**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
6.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
7. 此隔离室为**禁烟区域**，请勿在建筑物内吸烟。
8.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
9. 若**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恶化，请告知检疫官。

健康安全守则

1. 务必注意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
2.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咳嗽、嗓子疼、流鼻涕等），务必随时在观察室内**佩戴口罩**。

부록 7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 검역관리대상자 지정

○ (역학조사팀) 확진자의 접촉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요청

○ (해외출입국관리팀)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및 검역 협조 요청

□ 검역조치 절차

<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시 >

1. (출입국외국인청) 검역관리대상자 출국사실 통보 및 정보공유

- 검역관리대상자가 출국심사 완료 후 관할 검역소에 정보* 공유

* 출국자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국편명, 출국시간 등

2. (검역소)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

-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 쪽지 등)

* 담당자 032) 740-9207

3. (해외출입국관리팀) 관련 부서 전파

- (역학조사·환자관리팀)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전파
- (상황분석·국제협력팀) IHR에 근거하여 출국 국가에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통보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시 >

1. (출입국외국인청) 검역소 통보

- 입국 심사 시 검역관리대상자 중 '검역확인증' 미소지자 검역소 통보

2. (검역소) 검역관리대상자 검역 수행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절차에 따른 검역 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메모보고(수신: 해외출입국관리팀)

부록 8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 출처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3106호(2021.4.23.)

○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공항 또는 시설에서 전환 조치)

○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❶ 본인의 배우자

❷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❸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다만,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본인)이 **3촌 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전환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제출 필요

▶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인 경우,** 시설격리대상자 인계시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다만, 격리대상자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가 **직접** 공항(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호자의 위임하에 대신 인계 가능(거소 및 가족관계 입증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책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의 자가격리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할 필요

○ **(기타 행정사항)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는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